

인천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2671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임호연

변론 종결 2021. 3. 19.

판결 선고 2021. 4. 23.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6. 3. 접수 제46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B 사이에 2019. 7.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7. 22. 접수 제58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0.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2,000만 원을 한도로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인은 2020. 3. 13. 무렵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D은행은 2020.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0. 4. 2. D은행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15,857,966원을 변제하였다.

다.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20,000,000원이다. 소외인의 소극재산으로는 E에 대한 채무 289,948,000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135,726,000원,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4,102,000원이 있다. 소외인은 2019. 5. 19.부터 E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9. 6. 3.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1.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9. 7. 2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9.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는 소외인의 누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

내지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일인2019. 5.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7. 19.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고, 소외인은 2019. 5. 19.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으므로, 이사건 대물변제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소외인은 2019. 5. 31. 무렵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A에게 별지 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항변에 대하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 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2014다237192 판결).

2)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로서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인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츠지붕 지하5층 지상15층 공동주택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7.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김포시 대 107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78분의 3.24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츠지붕 지하5층 지상15층 공동주택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7.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김포시 대 107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78분의 3.24

-이상-